#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525 제출연월일 : 2025. 5. 15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4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 년을 입장시킨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4조제2호 및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9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| 제94조(벌칙)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벌금에 처한다.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(생 략)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|  |  |
| 2.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|  |  |
| 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<u>킨 자</u>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3. ~ 7. (생 략)       | 3. ~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  |  |
| 제9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| 제95조(벌칙)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벌금에 처한다.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1.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           |  |  |
| <u>1</u> . (생 략)    | <u>1의2</u> . (현행 제1호와 같음) |  |  |
| 2. ~ 12. (생 략)      | 2. ~ 1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|  |  |